

참고

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수단 운영(안)

- (운영 기준) 신용·체크카드 및 간편결제를 기본 지급수단으로 운영하고, 예외적 지급수단으로 전용카드(기명식 선불카드) 운영

※ 저신용, 카드사 거절 등의 사유로 카드 바우처(신용·체크카드) 지급이 곤란한 경우 간편결제 수단으로 바우처 지원이 가능하며, 기타 예외적 수단으로 전용카드(기명식 선불카드) 발급 운영



- (신용·체크카드) 신청인이 보유한 본인 명의 신용·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지급(※ 다음 학년도 자동신청 지원)

카드 바우처(시중 9개 카드사 전체)	
	<p>농협, 롯데, 삼성, 신한, 하나, 우리, 현대, KB국민, 비씨</p> <p>☑ [BC카드 제휴은행] IBK기업은행, 광주은행, 부산은행, 새마을금고, 수협, 신한, 우체국, 제주은행</p> <p>☑ [KB국민카드 제휴은행] 전북은행</p>
<p>☞ 신청인이 보유한 본인 명의의 카드사의 신용·체크카드로 바우처 포인트 지급</p> <p>※ 해당 학년도에 한번 선택·신청완료한 카드사는 변경하거나 중복 선택·신청 불가</p>	

- (간편결제) 신청인 본인 명의로 교육급여 바우처 간편결제 수단을 발급 하여 포인트 지급

- 저신용 등 신용카드 발급 제한자도 바우처 지원 가능

- ※ 교육급여 바우처 간편결제 운영사(NHN페이코) '기명 회원' 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
- ※ 교육급여 바우처 전용 지급수단으로 발급(개인 계좌 등 연결 및 충전 불가)
- ※ '24학년도 바우처 대상 신규 도입('23학년도 바우처는 신청 불가)

간편결제(PAYCO 페이코)	
	
<p>페이코(PAYCO) 간편결제 수단(앱/웹, 실물카드)</p> <p>☑ 페이코 기명회원 대상 바우처 신청 및 발급 가능</p> <p>☑ 실물카드 없이도 모바일 앱결제로 온오프라인 사용 가능</p> <p>☑ 실물카드 발급 희망 시 페이코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·발급 가능</p>	
[간편결제(앱/웹)] 자동 발급	[실물카드] 별도 신청 필요
<p>☞ 신청인 본인인증을 완료한 페이코 아이디(기명회원)로 바우처 발급 및 포인트 지급</p> <p>※ 페이코 비회원 또는 무기명 회원은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(신청인 본인 명의 휴대폰)을 통해 '기명회원'으로 등록 후 바우처 신청 진행 가능</p> <p>※ 해당 학년도에 중복하여 선택·신청 가능(예: 4월에 자녀A 신청 후, 5월에 자녀B 추가 신청 가능)</p>	


□ (예외적 전용카드 발급) 저신용, 카드사 거절 등의 사유*로 신용·체크카드를 통해 바우처 배정이 곤란한 경우, 기명식 선불카드(신한카드) 형태의 ‘전용카드’ 제공하여 바우처 지원

* 신용카드 발급 제한자의 경우 간편결제 수단으로 바우처 지원이 가능하나, 그 밖의 사유로 간편결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용카드 신청 가능

○ (전용카드) 신청인 본인 명의로 교육급여 바우처 전용카드(기명식 선불카드)를 제공하여 바우처 지급

- 저신용 등 신용카드 발급 제한자도 바우처 지원 가능

※ 교육급여 바우처 전용카드 운영사(신한카드)를 통해 카드 신청 필요

전용카드(기명식 선불카드)	
<p>< 전용카드 발급 예시 ></p> 	<p>기명식·충전형 선불카드(운영사: 신한카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☑ 온라인·오프라인 가맹점 사용 가능 ☑ 카드 1장당 500만 원까지 충전 가능(근거: 여신금융업법) ☑ 카드 유효기간 명시(계속사용 불가) ☑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전용카드 신청시 등록된 '카드 수령지' 주소로 배송(인편 전달)되며 본인수령 확인 후 사용 가능
<p>신청인 본인 명의의 '기명식 선불카드'를 발급하여 포인트 충전</p> <p>※ '기명식 선불카드'란 소지자가 정해진 카드로써, 카드사(신한카드) 홈페이지에서 직접 '본인인증'을 통해 '교육급여 바우처 전용카드' 신청 진행(카드 수령지 입력 등) 필수</p> <p>※ 유효기간이 정해진 카드로 다음 학년도 바우처 자동신청(계속사용) 불가(매년 신규신청 필요)</p>	